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8. 10.] [고용 노동부령 제362호, 2022. 8. 10., 일부개정]

종전에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 8. 10. 개정 규칙은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소가 옥내·옥외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제566조).

관련구성원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srlee@shinkim.com

박성기

변호사

02-316-4280

skipark@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